

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9. 6. 25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9. 6. 25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(99. 7. 6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중욱)

가. 제안이유

○ 부천시시립도서관 북부분관 개관으로 인한 조례 개정

나. 주요골자

○ 시립도서관 북부분관의 개관으로 인한 명칭 정리

• 현행

- 본관 : 부천시시립도서관

- 분관 : 부천시시립도서관 심곡분관

• 개정

- 본관 : 부천시시립도서관

- 분관 : 부천시시립도서관 심곡분관, 부천시시립도서관 북부분관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179호
의결년월일	99. 7. 8 (제71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6. 25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- 부천시시립도서관 북부분관 개관으로 인한 조례 개정

주요골자

- 시립도서관 북부분관의 개관으로 인한 명칭 정리

• 현행

- 본관 : 부천시시립도서관
- 분관 : 부천시시립도서관 심곡분관

• 개정

- 본관 : 부천시시립도서관
- 분관 : 부천시시립도서관 심곡분관, 부천시시립도서관 북부분관

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별표1중 구분, 명칭, 위치 중 부천시 시립도서관 심곡분관란 다음에 부천시 시립도서관 북부분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분	명 칭	위 치
분관	부천시 시립도서관 북부분관	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32번지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